

#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소도체 육량등급판정기준 적용

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의 기술도를 고려하여 쇠고기의  
불가식 지방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쇠고기  
육량등급판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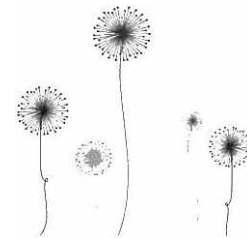
농림수산물부고시 제2011-171호(2011.10.18)에 따라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육량등급판정 기준을 개정 시행합니다.

### 개정목적

- 쇠고기 생산비를 절감하여 FTA 등에 대응한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
- 불가식지방의 생산량을 줄이고 지방 과다형 쇠고기 생산 억제

### 개정내용

- 육량등급별 육량지수 범위 조정



### 〈등급별 육량지수 범위〉

현행	육량등급	육량지수	개정	육량등급	육량지수
	A	67.50 이상	➤	A	67.20 이상
	B	62.70 이상 ~ 67.50 미만		B	63.30 이상 ~ 67.20 미만
	C	62.70 미만		C	63.30 미만

### 〈육량지수 산식〉

육량지수 = 68,184 - [0.625 × 등지방두께(cm)] + [0.130 × 배최장단면적(cm²)] - [0.024 × 도체중량(kg)]  
(단, 한우의 도체는 3.23을 가산함)